

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4. 9. 4 선고 2023가단37093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중양회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미

담당변호사 김진모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덕

변 론 종 결 2024. 7. 3.

판 결 선 고 2024. 9. 4.

주 문

-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/3 지분에 관하여,
가. C과 피고 사이에 2023. 5. 1.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.
나. 피고는 C에게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등기계 2023. 5. 3. 접수 제10930호로 마친
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-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기초 사실

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4, 갑 제2호증의 1 내지 4, 갑 제3호증의 1 내지 4, 갑 제4호증의 1 내지 5,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이를 인정할 수 있다.

가. 원고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(이하 ‘D’이라 한다)의 보증의뢰에 따라 보증금액 170,000,000원, 보증기한을 대출일로부터 3년으로 하여 D의 E 주식회사(이하 ‘E’이라 한다)에 대한 F대출에 관하여 D와 사이에 보증약정(이하 ‘이 사건 제1 보증약정’이라 한다)을 체결하고, 2018. 4. 30. 그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었고, 이에 D는 위 보증서를 이용하여 E으로부터 200,000,000원을 대출받았다.

나. 또한 원고는 D의 보증의뢰에 따라 보증금액 75,650,000원, 보증기한을 대출일로부터 1년으로 하여 D의 E에 대한 F대출에 관하여 D와 사이에 보증약정(이하 ‘이 사건 제2 보증약정’이라 하고, 이 사건 제1 보증약정과 함께 ‘이 사건 각 보증약정’이라 한다)을 체결하고, 2019. 6. 26. 그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었고, 이에 D는 2019. 6. 28. 위 보증서를 이용하여 E으로부터 89,000,000원을 대출받았다.

다. D는 이 사건 각 보증약정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보증채무이행금액과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약정지연손해금률에 의한 손해금, 비용 등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, D의 대표이사이던 C은 이 사건 각 보증약정에 따라 D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.

라. 한편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 제1 부동산’이라 하고, 순번대로 ‘이 사건 제○ 부동산’으로 지칭하며,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모두를 ‘이 사건 각 부동산’이라 한다)에 관하여 1986. 6. 24.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1986. 6. 28.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고, 이

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하여 1991. 2. 28. G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었으며, 이 사건 제3 부동산에 관하여 1989. 4. 17.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89. 5. 19.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있었고, 이 사건 제4 부동산에 관하여 1989. 4. 13.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89. 5. 22.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, G의 사망 이후 G의 배우자인 피고와 자녀들인 C, H이 2003. 9. 23.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3. 3. 26.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각 1/3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마. 이후 D는 약정이자금의 연체로 E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기한 이익을 상실하였는바, 원고는 2023. 6. 29. 이 사건 제1 보증약정에 따라 E에 174,961,655원을 대위변제 하였고, 같은 날 이 사건 제2 보증약정에 따라 E에 77,239,271원을 대위변제하였다.

바. C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자신의 지분(1/3 지분)에 관하여 2023. 5. 1.자 증여(이하 '이 사건 증여계약'이라 한다)를 원인으로 하여 2023. 5. 3. 피고 명의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(이하 '이 사건 이전등기'라 한다).

사. C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/3 지분과 김천시 I 전 445㎡를 소유하고 있었으나, 이 사건 각 보증약정에 따라 D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관한 연대보증채무 등이 C의 적극재산 가액을 초과하여, C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.

2. 판 단

가. 피보전채권의 성립

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으나, ① 그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이 사건 각 보증약정 및 원고와 C 사이의 연대보증계약이 이미 체결되어 있었고, ② D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무렵 대출금에 관한 이자를 연체하기 시작하여 결국 보증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,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시점부터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 할 것이고, ③ 실제로 원고가 이 사건 각 보증약정에 따라 E에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함으로써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,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.

나. C의 채무초과 여부

앞서 본 바와 같이 C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.

다.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

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이른바 채무자의 악의, 즉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, 한편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무상 양도하거나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(대법원 1999. 11. 12. 선고 99다29916 판결 등 참조).

앞서 본 바와 같이 C의 소극재산 합계액이 적극재산 합계액을 초과하여 C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바,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,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C이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소유 부동산 중 담보가치가 있었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며, 또한 C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라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어서, C의 사해의사도 인정되고,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.

라.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

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단독상속한 것인데 그 명의만 각 1/3 지분씩 C, H 앞으로 이전등기를 마쳤던 것으로 최근 C, H에게 세제 불이익이 있다고 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라 피고 앞으로 소유권을 회복한 것인바,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증여계약이 일반채권자를 해하게 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다툰다.

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

있는 것이고,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,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된다(대법원 2010. 7. 22. 선고 2009다60466 판결 등 참조).

살피건대,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2호증의 1, 2,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, ①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/3 지분에 관하여 그 명의만 C, H으로 하여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는 것이나, 피고와 C, J이 그 명의로 이전등기를 마쳤을 무렵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재산권행사를 하였던 점, ② C의 배우자인 K는 2012. 3. 29.경 김천시 L건물 M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, 2016. 8. 22.경 김천시 N건물 O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, C의 주장처럼 다주택 보유 상황을 해소하려고 한 것이라면 위 아파트 구입 전에 이 사건 제2 부동산 중 1/3 지분과 이 사건 제4 부동산 중 1/3 지분을 처분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, C은 그 당시 별다른 처분 없이 배우자 명의로 2주택을 추가매수 하였다는 점에서 C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점, ③ C의 주장에 따르면 C은 다주택 보유 상황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것인데, 그럼에도 20년 이상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/3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가 D가 대출금에 관한 이자를 연체할 무렵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자신의 지분을 처분하였던 점(D의 대출금에 관한 이자연체로 인한 채무부담 상황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지분을 처분할 별다른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) 등을 종합하여 보면,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/3 지분에 관하여 그 명의만 C 앞으로 하여 두었다거나 피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이 C의 일반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.

마.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

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/3 지분(C의 지분)에 관하여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,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/3 지분에 관하여 마쳐진 이 사건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 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김선영

별지